



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

# 공 보

제707호 2019. 7. 17.(수)



선	기관의 장
결	

## 훈 령

제433호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 3

## 고 시

제2019-80호 도로명주소 고시 ..... 5  
 제2019-81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3-26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 7  
 제2019-82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 9

## 공 고

제2019-908호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 10  
 제2019-910호 보상계획 열람공고 ..... 12  
 제2019-914호 2019년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사업 시행 공고 ..... 15  
 제2019-917호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재열람·공고 ..... 20  
 제2019-920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24  
 제2019-920호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31  
 제2019-921호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 38

회 랑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행정 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거 창 군 수

서 명 생 략

2019년 7월 17일

거창군 훈령 제433호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도붙임 세부분장사무 별표(변경) 1부. 끝.

## 거창군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의안 번호	2019-
----------	-------

제출연월일	2019. 6. .
제 출 자	행정과장

### 1. 제안이유

창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조직의 최종구성 단위인 담당을 분리하고 분장사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도모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가. 환경과 창포원담당을 2개담당으로 분리(안 별표)

- 1) 창포원운영담당
- 2) 창포원시설담당

#### 나. 분장사무 추가(안 별표)

- 1) 경제교통과 일자리총괄담당 : 청년정책업무 총괄
- 2)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원예특작담당 : 거창약초유통센터 업무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12조
-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7. 17.

거창군수

- 부여한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1길 34-20 등 7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8조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2)에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 도로명주소 부여

일련 번호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고 시 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도로명	도로명주소		
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월평리 2041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밤티재로 1194	2009-12-28	2019-07-17	밤티재라는 지명이 반영된 도로	
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828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송계로 589	2009-12-28	2019-07-17	송계사를 지나 고제면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3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병곡리 261	경상남도 거창군 북상면 가리실길 7	2009-04-01	2019-07-17	경치가 좋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 반영	
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리 384-2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당산1길 34-20	2009-04-01	2019-07-17	마을 근처에 아거이 나무가 많아서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5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855-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셋단길 21-24	2009-12-28	2019-07-17	셋단이라는 자연마을 이름을 반영한 도로	
6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수월리 22-20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601-26	2009-04-01	2019-07-17	의상봉으로 가는 길임을 반영한 도로	
7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리 1510	경상남도 거창군 남상면 임불1길 73-153	2009-04-01	2019-07-17	북쪽 임방에 새벽에 스님이 부처에게 예를 드리는 명당터가 있다는 풍수설에 따라 붙여진 자연마을 이름이 반영된 첫번째 도로	

◎거창군 고시 제2019 - 81호

**거창군 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소로3-261호선)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

거창군 고시 제21호('19. 2. 28.)로 최초 결정된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소로3-261호선)의 사업시행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계획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합니다.

2019년 7월 17일

**거 창 군 수**

1. 사업개요

종류	사업명	위치		시행규모						시행위치		최초 결정일	비 고
		읍,면	리	등급	류별	번호	연장	폭	면적	시점	종점		
도시 계획 시설	도시계획도로 (소로3-261호선)	거창	송정	소로	3	261	130	6	1,112	거창읍 송정리 1057	거창읍 송정리 566-6	거고21호('19.02.28)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명 칭 :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주 소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사업명 : 송정 마동마을(소로3-261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 사업의 착공일 및 준공예정일

착 수 일 : 실시계획인가일

준공예정일 : 2020. 12. 31.

4.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물건 및 권리에 관한 명세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 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 명	권리자	
합계	-	-	-	16,748	1,112					
1	거창읍 송정리	1057	도	2,931	3		국(건설부)			
2	"	1061-11	구	852	155		국(농림수산부)			
3	"	576-2	전	516	34	경상남도 거창군 위천면 화리골길 103-13	이홍월			
4	"	505-2	목	1,772	2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08	김영조	근저당	거창축협	
5	"	569-1	대	435	5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64,105동502호 (배머루마을인정베네치아빌리지)	안금옥외1인	근저당	신원농협	
6	"	570	답	16	16	거창읍 송정리 564-4	김점술	근저당	신원농협	

7	"	569-4	대	435	3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영문로64,105동502호 (배머루마을인정베네치아빌리지)	안금옥외1인	근저 당	신원 농협	
8	"	562-1	잡	717	46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08	김영조	근저 당 지상 권	거창 축협	
9	"	569-2	답	1,305	14	대구달서구장기동814-1 장기파랑새마을 503동 1203호	성태원			
10	"	562-9	잡	12	12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6	허순례			
11	"	562-8	대	352	24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16	허순례			
12	"	569-3	답	3,661	16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59	최덕산			
13	"	562-2	잡	757	65	거창군 거창읍 마동길 128-8	김귀행	근저 당 지상 권	거창 사과 농협	
14	"	567	답	248	248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459	경주최씨덕 산정중중			
15	"	562-3	대	241	20	거창읍 소만2길 62, 105동104호(소 만주공아파트)	정홍자			
16	"	566	대	598	50	거창읍 소만2길 62, 106동1202호 (소만주공아파트)	이현숙	근저당	거창 농협	
17	"	562-6	대	522	43	대구광역시 달성군 다사읍 대실역북로26 208동 1102호 (대실역청 아람 2단지)	여태훈			
18	"	566-4	답	205	180	거창읍 소만2길 62, 106동1202호 (소만주공아파트)	이현숙			
19	"	562-4	대	175	29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 562-4	차일웅			
20	"	562-7	대	665	113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1길 114-9	김중렬	근저 당 지상 권	거창 농협	
21	"	566-6	답	333	5	거창군 거창읍 공수들8길 64	윤동문			

※ 관계도서는 거창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도시건축과(☎055- 940-35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사업목적: 농지조성 【밭작물 재배】
2. 사업내역

위 치	사업시행면적(m <sup>2</sup> )		사 업 비	사업 예정기간	사업시행자	
	지 적	개간 승인면적			주 소	성 명
마리면 월계리 산89-2	14,834m <sup>2</sup>	<b>2,305m<sup>2</sup></b>	8,184천원	2019. 7. 17. ~ 2020. 7. 16.	부산광역시 사하구 하신변영로 233, 204동 702호(하단동, 가락타운)	김 욱 금

3. 사업효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농지조성)
4. 열람장소: 거창군청 건설과 농업기반담당 【☎ 055-940-3542】

2019년 7월 17일

# 거 창 군 수

# 전기사업 양수인가 공고

전기사업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태양광발전)양수인가 신청을 수리하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및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 07. 11.

거 창 군



- 1. 공 고 명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 인가 공고
- 2. 공고기간 : 2019. 07. 11. ~ 2018. 07. 31.
- 3. 공고장소 :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 4. 공고내용 : 전기(태양광발전)사업 양수인가 내역  
가. 자연햇빛 발전소 ⇒ 신영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 도 인	양 수 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121호)	발전소명	자연햇빛 발전소	신영 태양광발전소
	대 표 자	박 명 순	손 창 식
	소 재 지	경북 경산시 대학로28길 31, 201동 1103호 (중방동, 중방 e-편한세상)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고기로 89, 104동 2602호 (동천동, 동천자이아파트)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309 (토지 위)	
	설비용량	99.72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8. 05. 14.	
	양수(예정)일	2019. 07. 11.	

나. 미래 태양광발전소

구분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122호)	발전소명	미 래 태양광발전소	
	대표자	김도형	김서윤
	소재지	경북 포항시 남구 중흥로 140번길 30-1 (상도동)	대구광역시 동구 송라로11길 86, 101동 1307호 (신천동, 동신우방타운)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309 (토지 위)	
	설비용량	99.72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8. 05. 14.	
	양수(예정)일	2019. 07. 11.	

다. (주)해드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 서원2 발전소

구분		양도인	양수인
태양광 발전사업 (거창군 제2018 -126호)	발전소명	(주)해드림에너지 태양광발전소	서원2 발전소
	대표자	천미옥	문상혁
	소재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1, 806호 (영통동, 호원빌딩)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 52, 802동 1301호 (풍덕천동, 신정마을)
	설치장소	경남 거창군 위천면 황산리 321, 323, 324 (토지 위)	
	설비용량	99.72kW(사업허가 용량)	
	허가일자	2018. 05. 14.	
	양수(예정)일	2019. 07. 11.	

5. 양수내용 : 양도인의 전기사업(태양광발전 사업허가)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 양수. 끝.

# 보 상 계 획 열 략 공 고

거창군에서 시행하는 『남상 오계(농어촌도로 202호선) 굴곡도로 정비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고 보상협약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7. 15.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 가. 사 업 명 : 남상 오계(농어촌도로 202호선) 굴곡도로 정비공사
- 나. 위 치 : 거창군 남상면 오계리 334-1번지 일원
- 다. 사 업 량 : 도로확포장 L=120m
-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 가. 토 지 : 거창군 남상면 오계리 334-1번지의 4필지
- 나. 물 건 : 편입 토지상에 소재한 지상물건 일체
- 다. 열람내용 : 사업구간 내 편입토지와 지상물건 등 확인 및 누락 여부
- 라. 보상조서 : 붙임문서 참조

### 3. 열람 및 이의신청

-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거창군청 건설과(☎055-940-3552)
- 다. 이의제기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4. 보상협의 및 지급시기 : 감정평가 실시결과 개별통지 예정

#### 5. 보상방법 및 절차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거창군과 토지등 소유자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
- 나. 보상장소, 보상금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개인별로 통지

#### 6. 감정평가업자 선정

-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거창군이 선정하는 감정평가업자 이외에 토지소유자 및 경상남도지사가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 각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나. 토지소유자는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천할 수 있음

#### 7. 기타사항

- 가. 보상조서 물건내역은 추후 분할측량 및 계획변경, 재조정,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해 변경 또는 제외될 수 있으며, 상기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함
- 다. 본 열람공고와 별도로 기 손실보상 협의 요청한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 할 예정이나 송달 불능 등으로 인한 미수령자에게는 본 열람공고로 송달에 갈음합니다

○ 보상조서(토지)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현실	공부	대장	편입면적	주 소	성 명	주소	성명	
합 계		5필지			8,522	804					
1	남상면 오계리	335-1	도	도	43	32		거창군			
2	남상면 오계리	335-2	전	전	122	10	거창읍 대동리 97 주공아파트 105-108	이상원			
3	남상면 오계리	334-1	임	임	1,240	194	부산시 북구 삼락동 417-12	이상권			
4	남상면 오계리	9-1	임	임	5,114	351	거창읍 상동길 21	신성희			
5	남상면 오계리	950	도	도	2,003	217		국(건설부)			

## 2019년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사업 시행 공고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2019년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지원 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7. 15.

### 거 창 군 수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도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 사업

나. 사업예산 : 10,000천원

다. 지원방법 : 거창사랑상품권(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라. 지원인원 : 100명

마. 지원시기 : 2019. 8. 1. ~ 예산소진 시 까지

바. 지원자격

- ① 65세 이상(1954. 12. 31.이전 출생자) 어르신 중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 ② 2019. 8. 1.이후 운전면허증(원동기면허 제외)을 자진 반납한 후 실효(경남지방경찰청) 처리된 어르신.

※ 신청자가 교통비 지원 인원을 초과할 시 선착순 우선 선정함.

#### 2. 접수 및 선정 세부절차

가. 지원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9. 8. 1 ~ 예산 소진 시 까지 평일 09:00~18:00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수처

- 운전면허 반납 신청 : 거창경찰서 민원실(055-949-0325)

- 지원금 지급 신청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055-940-3382)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 【지원 절차】

면허증 반납

- ▶접 수 : 근무시간 내(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경남도내 시군경찰서 민원실
- ▶접수방법 : 방문접수(신분증 지참  
문의) 거창경찰서 민원실 055-949-0325



지원금 지원 신청

- ▶접 수 : 근무시간 내(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 ▶구비서류
    - 지원금 지급 신청서(경제교통과 비치)
    -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
    - 신분증 지참
- 문의)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055-940-3382



지원금 지급

-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 〈 신청시 유의사항 〉

- \* 거창군청(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함.
- \* 운전면허 반납 처리 시 운전이 불가하며, 필요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함.
- \* 여러개의 면허증 반납하더라도 1개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대상 중 원동기 면허 반납자 제외
- \* 지원금은 거창사랑상품권 지급(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나. 지원대상자 선정 및 발표

- 2019년 신청자 : 자격 요건 충족 시 즉시 지급

다. 지원대상자 지급방법

- 거창사랑상품권 : 지원지급 신청 장소에서 지급(경제교통과 교통담당)

### 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기타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사항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940-3382)로 문의 바람.

# 고령자 운전면허증 사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신청서

접수 번호	신청 인적 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집전화		휴대전화		
		운전면허증 사진반납일	2019 년 월 일			
		차량소유 여부		차량번호		

본인은 거창군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사진반납 지원금 신청조건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신청조건(모두 해당 시 신청가능)
  - 주민등록상 1954. 12. 31 이전 출생
  - 신청일 현재 운전면허 사진반납(원동기면허 제외) 완료
  - 경상남도 거창군 주민등록지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에 동의 하신 분
- 준비서류
  -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 1부.
  - 신분증 지참

2019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 거창군수 귀하

※ 2014.08.07.자로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이용이 불가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함으로 본인 확인을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 수집 및 주민등록 등본 열람에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확인 : (서명 또는 인)]

### 〈 신청시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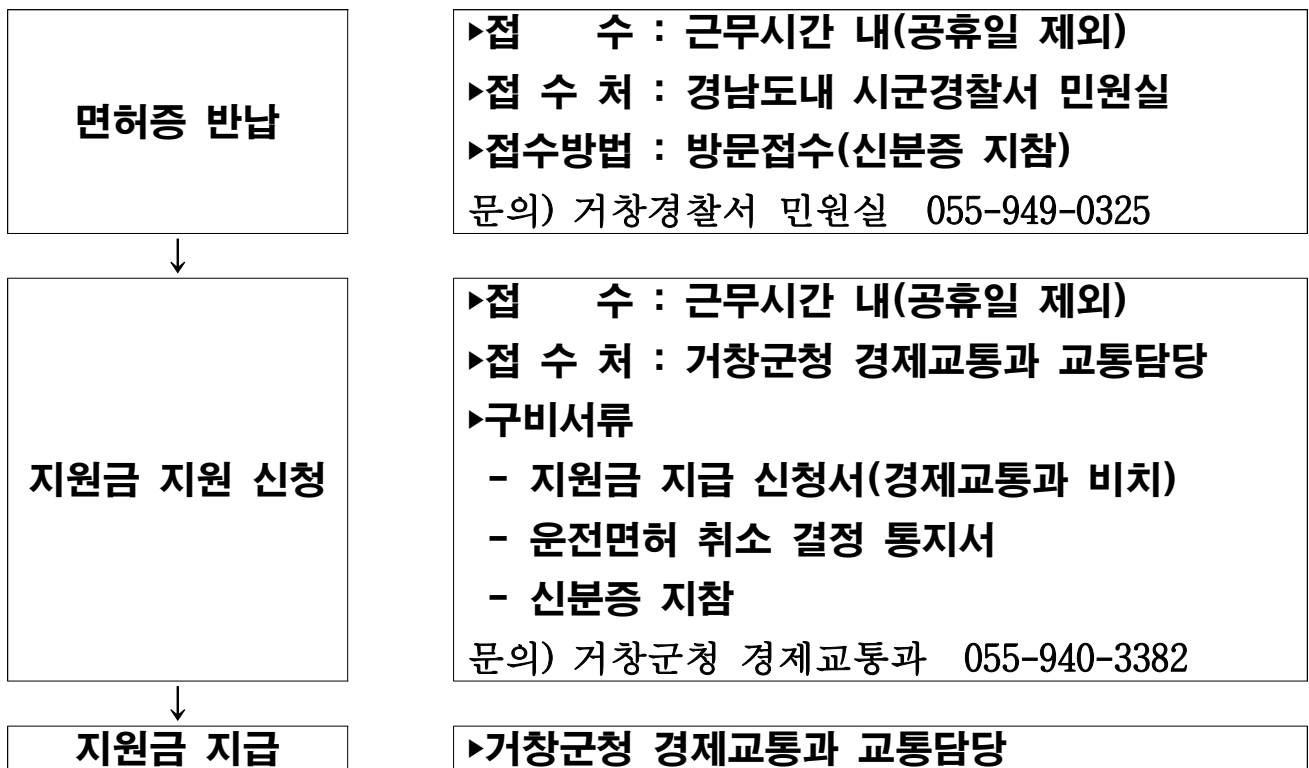
- \* 거창군청(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함.
- \* 운전면허 반납 처리 시 운전이 불가하며, 필요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함.
- \* 여러개의 면허증 반납하더라도 1개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대상 중 원동기 면허 반납자 제외
- \* 지원금은 거창사랑상품권 지급(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 고령자 운전면허증 사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 안내

## 〈홍보 안내문〉

- \* 지원자격 : 65세 이상(1954.12.31. 이전 출생자) 어르신 중 거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2019.8.1.이후 운전면허(원동기면허 제외)를 사진 반납하여 실효처리된 자
- \* 지원인원 : 100명(단, 신청자가 많을 경우 접수 선착순으로 지급)
- \* 지원사항 : 거창사랑상품권 지급(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 \*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거창군청 경제교통과 940-338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 절차】



## 〈신청시 유의사항〉

- \* 거창군청(경제교통과) 방문 접수 시 경남지방경찰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 처분(취소) 결정통지서를 첨부해야 함.
- \* 운전면허 반납 처리 시 운전이 불가하며, 필요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함.
- \* 여러개의 면허증 반납하더라도 1개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 \* 지원대상 대상 중 원동기 면허 반납자 제외
- \* 지원금은 거창사랑상품권 지급(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

## 거창군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 결정(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위한 재열람·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2007.03.29.)로 최초 결정, 거창군 고시 제2008-15호(2008.03.13.)로 최초 인가한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07. 16.

### 거 창 군 수

#### □ 거창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 1.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m <sup>2</sup>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체육시설	골프장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1,843,303	감)25,749	1,817,554	경상남도 고시 제2007-92호 (2007.03.29)	경미한 변경

##### 2. 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결정(변경)내용	결정(변경)사유
1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면적변경 - 1,843,303m<sup>2</sup>→1,817,554m<sup>2</sup> [감) 25,749m<sup>2</sup>]</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편입 불가 토지 제척 및 지적 분할 측량 결과를 반영한 면적 변경</li> </ul>

□ 거창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변경없음)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덕산리 산1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변경없음)

- 종류 : 군계획시설(체육시설)사업
- 명칭 : 거창 컨트리클럽 조성사업(일명:감악산골프장)

3. 사업의 면적 (변경)

- 당 초 : 1,843,303㎡
- 변 경 : 1,817,554㎡ (감 25,749㎡)
-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군계획시설 (체육시설)	합 계	1,843,303	감) 25,749	1,817,554	100.0	100.0	
	체육시설 용지	429,269	감) 40,244	389,025	23.3	21.4	
	건축시설 용지	12,800	감) 4,260	8,540	0.7	0.5	
	공공시설 용지	98,574	감) 4,256	94,318	5.3	5.2	
	녹지 용지	1,302,660	증) 23,011	1,325,671	70.7	72.9	

4.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 성 명 : 코리아신타(주) 대표이사 최익중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변경)

- 당 초 : 2008년 3월 13일 ~ 2019년 3월 12일
- 변 경 : 2008년 3월 13일 ~ 2019년 12월 31일

6. 열람 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7.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붙임

8. **의견제출 및 열람** :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붙임]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면적 (㎡)		편입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2,669,183	1,843,303	1,843,303	1,817,554					
1	신원면 덕산리	231	답	255	255	255	25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2	신원면 덕산리	255	임	205	205	205	205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3	신원면 덕산리	256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4	신원면 덕산리	257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5	신원면 덕산리	374	답	2,172	2,172	2,172	2,17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6	신원면 덕산리	377	임	89	89	89	89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7	신원면 덕산리	378	답	873	873	873	87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8	신원면 덕산리	379	답	231	231	231	2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9	신원면 덕산리	380	답	423	423	423	42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0	신원면 덕산리	391	답	833	833	833	833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1	신원면 덕산리	440	임	1,236	1,236	1,236	1,236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2	신원면 덕산리	산13	임	2,656,341	1,830,461	1,830,461	1,794,09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13	신원면 덕산리	산13-12	임	-	-	-	750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역사로3길 5, 1301호(검사동, 동촌모노스)	거창씨씨 개발유한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14	신원면 덕산리	산13-13	임	-	-	-	14,037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역사로3길 5, 1301호(검사동, 동촌모노스)	거창씨씨 개발유한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참저축은행	
15	신원면 덕산리	산52	임	4,165	4,165	4,165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리 114	수원백씨농계 공과중중 (대표자:백정석)			
16	신원면 덕산리	산59	임	2,182	2,182	2,182	2,18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빌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근저당	주식회사 국민은행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2. 개정이유

-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과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기업의 고용 안정화 및 인구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규정 개정  
(안 제24조제3항)
-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규정 신설  
(안 제24조의3)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07. 16. ~ 2019. 08. 05.(20일간)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55)940-3362
- FAX : 055)940-3679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항 중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관내 기업”으로 한다.

③ 군수는 관내 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3(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① 군수는 산업·농공단지 고용증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산업·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기업이 운영하는 통근버스 차량에 대해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p> <p>①~② (생 략)</p> <p>③ 군수는 <u>산업단지 내 중소기업</u>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p>	<p>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군수는 <u>관내 기업</u>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24조의3(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p> <p>① 군수는 <u>산업·농공단지 고용증대 및 활성화</u>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산업·농공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주기업이 운영하는 통근버스 차량에 대해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범위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p>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생략)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 6.(생략)

####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 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알선,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2019.1.30.)
- ③ 군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향신설2019.1.30.)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7월 16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가 일부개정됨에 따라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사업 등 개정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규정 개정(안 제6조)
- 산업·농공단지 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규정 신설(안 제8조)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9. 07. 16. ~ 2019. 08. 05.(20일간)

6.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8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 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미래전략과

- 전화번호 : 055)940-3362

- FAX : 055)940-3679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을 “관내 기업”으로 “산업단지 내”를 “관내”로 한다.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관내 기업이란 신청일 현재 관내에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업체를 말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군수는 조례 제24조의3에 따른 산업·농공단지 내 기업의 통근버스 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규모: 차량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 연간 30백만원 이내
2. 차량: 12인승 이상
3. 지원기간: 10년 이내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u>산업단지 내 중소기업</u>”이란 신청일 현재 <u>산업단지 내</u>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lt;신 설&gt;</p>	<p>제6조(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 ① 조례 제24조제3항에서 “<u>관내 기업</u>”이란 신청일 현재 <u>관내</u>에 공장등록하고 가동 중인 업체를 말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조(근로자 통근버스 임차료 지원) <u>군수는 조례 제24조의3에 따른 산업· 농공단지 내 기업의 통근버스 차량에 대한 임차료를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규모: <u>차량 임차료의 50퍼센트 이내, 연간 30백만원 이내</u></li> <li>2. 차량: <u>12인승 이상</u></li> <li>3. 지원기간: <u>10년 이내</u></li> </ol>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건	비 고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4. 6., 2007. 5. 17., 2009. 12. 29., 2011. 7. 14., 2017. 4. 18.>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 자. 공유재산관리(公有財産管理)
- 차. 가족관계등록 및 주민등록 관리
-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 2. (생략)
- 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 가. 소류지(小溜池)·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 다. 농업자재의 관리
-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 바. 농가 부업의 장려
- 사. 공유림 관리
-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 자. 가축전염병 예방
-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 타. 중소기업의 육성
-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 하. 우수토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 4. ~ 6.(생략)

#### □ 거창군 기업사랑과 기업활동 촉진조례

- 제24조(근로자 주거지원) ① 군수는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군내로 이주하는 근로자의 주택매입 또는 전세 등을 알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군수는 기업에서 10가구 이상의 사원주택을 집단으로 건립할 경우에는 건립부지의 알선, 진입도로 개설, 가로등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부지매입비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2019.1.30.)
- ③ 군수는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이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료를 지원할 수 있다.(향신설2019.1.30.)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대상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환급금에 대하여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19. 7. 17. ~ 2019. 7. 31(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6. 송달내용 : 지방세 환급금 청구권 소멸시효 대상에 해당되는 납세자께서는 기한 내 아래 연락처로 지방세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신청이 없을 경우 환급금 청구권은 소멸되며, 해당 지방세환급금은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7. 문의사항 : 거창군청 재무과 세입관리담당(☎ 055-940-3252)

2019년 7월 16일

거창군수